

1. 개정이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(법률 제19764호)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점검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장의 점검 업무 구체화(안 제6조의3 제1항 신설)

- 관리비의 공개·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,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,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

나. 관리비 점검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의3 제2항 신설)

-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요청 권한 명시

다.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(안 제6조의3 제3항 신설)

- 제1항에 따른 점검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한 부여
- 라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6조의3 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(예정)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2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) 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

체의 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비 공개·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
2.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3.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비 점검을 위해 필요

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)</u> <u>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관리비 공개·변동률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</u> <u>3.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은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자료의</u>

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
된 사항 외에 관리비 점검을 위
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